

기 관 명

수신자
(경유)
제 목 징발물 반환불능 통지

「징발법」 제16조에 따라 귀하의 징발재산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사유로 원상태로 반환할 수 없음을 통지합니다. 징발재산에 대한 보상은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처리됩니다.

징발 대상자	성 명					생년월일		
	주 소	(전화번호:)						
징발증 번호	재 산 소재지	지 번	품명 (종류·지목)	규격(구조) 또는 공부면적	수량 또는 면적	멸실일 또는 훼손일	훼손 정도 (%)	
반환불능 사유								
※ 멸실 또는 훼손되어 원상태로 반환할 수 없게 된 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을 것								

끝.

징 발 관 직인

기안자	직위(직급) 서명	검토자	직위(직급)서명	결재권자	직위 (직급)서명
협조자					
시행	처리과명-연도별일련번호(시행일)	접수	처리과명-연도별일련번호(접수일)		
우	도로명주소 /	홈페이지 주소			
전화번호()	팩스번호() /	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		/ 공개구분	